

제 527 호
1975.10.22.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527 호 :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증개정규칙 ... 3
제 1528 호 :	서울특별시시장사무위급규칙 개정규칙 4
◎ 교 시	
제 174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지하보도) 신설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9
제 175 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및지적승인 9
제 176 호 :	비료판매업 등록고시 10
◎ 공 고	
제 253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0
제 254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4
제 205 호(중구공고) :	공인신조공고 17
제 211 호(성북구공고) :	등장직인및제인개각공고 17
제 2 호(강남구공고) :	등장공인공고 19
◎ 사 령 2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준 인

1975년 10월 22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527 호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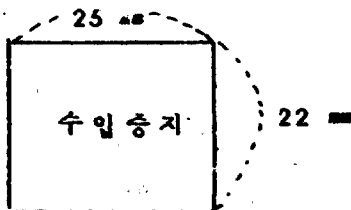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형제 1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발행된 수입증지는 이 규칙에 의한 수입증지와 병용한다.

<도형제 1호>

수입증지의 모양



수입증지의 모양과 규격(가로 25mm×세로 22mm)은 동일하게 하고 종류는 아래와 같이 색채로 구분하여 해당 액면가를 표시한다.

종 류	액 면 가
5 원 권	홍 색
10 원 권	갈 색
20 원 권	주 황 색
50 원 권	녹 색
100 원 권	남 색
500 원 권	자 색

서울특별시시장사무처리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구 자 순 인

1975년 10월 22일

2) 서울특별시규칙제 1528 호

서울특별시시장사무취급
규칙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시장사무취급규칙”을
“서울특별시시장사무처리규칙”으로
하고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3 조
다음에 “제 3 조의 2”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 3 조 (개설허가신청) ①시장개설허
가를 받고자 할때는 “별지제 1 호
서식”의 시장 개설허가신청서를
시장개설허가를 관할하는 구청장
(출장소장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개설허가신청은 시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 조제 2 호의
규정의 법인으로서 설립(개설)부
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 3 조의 2 (시설승인) ①구청장이
시장승인을 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으
로부터 관계법규의 저촉여부에 관한
사전승인을 득한후 승인한다. 이
때의 시설승인은 건축허가로써 가름
한다.

②시장개설허가를 받은자의 시설불
건축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건축법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시장업무
를 관장하는 수무부서의 협의를 거
쳐야 하며 협의시에는 법제 5 조 동
시행령제 1 조 내지 제 2 조의 규정
및 시장현대화계획의 적합여부를 점
토하여야 한다.

제 5 조중 “제 3 조제 2 항”을 “제 3 조의
2”로 한다.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 (개설허가) ①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장승인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개설허가한다. 또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경
신발매도 또한 같다.

<p>②백화점의 개설허가시에는 ㉞번지 제 4호시식 ㉞의 허가조건외 백화점은 개설자가 직영할이 원칙으로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여야 한다.</p> <p>제 15조를 삭제한다.</p> <p>제 16조를 삭제한다.</p>	<p>별지제 1호 제 3호 및 제 4호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별지제 1호시식></p> <p style="text-align: center;"><u>시 장 개 설 허 가 신청서</u></p> <p>수 신 서울특별시장 19 년 월 일</p> <p>신청인주소</p> <p>법인체명</p> <p>대표자 (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위 치</th> <th style="width: 15%;">지 목</th> <th style="width: 15%;">지 계</th> <th style="width: 15%;">신성변적</th> <th style="width: 15%;">대지소유자</th> <th style="width: 1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40px;"></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위 치	지 목	지 계	신성변적	대지소유자	비 고						
위 치	지 목	지 계	신성변적	대지소유자	비 고								
<p>시 장 명</p> <p>건물의 구조 및 규모</p> <p><첨 부 서 류></p> <table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1. 현황측량도(1/600 또는 1/1,200) 7부</td> <td style="width: 50%;">6. 손익계산서</td> </tr> <tr> <td>2. 토지등기부등본 1부</td> <td>7. 재산목록</td> </tr> <tr> <td>3. 사업계획서</td> <td>8. 출자자명단</td> </tr> <tr> <td>4. 업무규정</td> <td>9. 정관</td> </tr> <tr> <td>5. 대차대조표</td> <td></td> </tr> </table>		1. 현황측량도(1/600 또는 1/1,200) 7부	6. 손익계산서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7.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8. 출자자명단	4. 업무규정	9. 정관	5. 대차대조표			
1. 현황측량도(1/600 또는 1/1,200) 7부	6. 손익계산서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7.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8. 출자자명단												
4. 업무규정	9. 정관												
5. 대차대조표													

<별지제 3 호서시>

시장시설보완및개장승인신청서

수 신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197 년 월 일

신청인주소

법인체명

대 표

㉞

1. 개 장 시 설

시설구분	수 량	면 적	시설구분	수 량	면 적
연 건 명		평	하 수 도	구경	연장
시 장 건 명		평	소 방 시 설		
점 포	개	평	오 율 처 리 장	개	평
사 무 실	개	평	창 고	개	평
변 소	대 개	평	시 내 소 방	독	평
	소 개		도 로	길 이	
상 수 도	구경%		채 평 및 관 기 설 비		

<첨 부 서 류>

1. 건축준공검사필증

2. 소방시설증명

<별지제 4 호서식>

제 호

시 장 개 설 허 가 증

시 장 명

위 치

개 설 자

위 시장은 이면 조건을 붙여서 개설 허가함.

서기 19 년 월 일

서 울 북 번 시 장

부 여 조 건

1. 시장건물 및 대지와 계반시설을 변경 또는 확장코자 할 때에는 시장법 상 소정의 신청을 필하고, 이에 따른 지시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하고 완비된 후에는 당시의 승인을 받아 개장할 것.
2. 위생 및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상설경비소를 설치하여 방화, 방범, 방역 등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를 갖추어 줄 것.
3. 휴장, 휴업일 및 개폐시작에 대하여는 귀사 업무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3일이상 휴업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당시의 승인을 받아 휴업할 것.
4. 시장내질서유지와 공익을 위한 계반사항은 개설자가 통괄 관리할 것.
5. 시장내의 공도, 사도를 막론하고 교통상 지장을 초래하는 여하한 행위도 일체 엄금할 것.
6. 시장내에는 기거생활을 위한 일체의 시설은 엄금한다.
7. 본 허가권은 타인에게 전대하여 여하한 권리관계도 설치하지 말 것.
8.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 명의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시의 승인을 받을 것.
9. 공해방지법에 저촉되어 농법에 의한 조치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행정 대집행법에 의거 당해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10. 시장의 건물 및 대지를 매매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보고할 것이며 건물 및 대지를 매매하여 시장경영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1. 모든 점포는 정찰제를 실시할 것
12. 선도유지가 필요한 육류 및 생선점포는 냉장고를 설치할 것.
본 조전은 필요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상 각조항 및 시장법을 위반할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74 호

서울도시계획시설(지하보도) 신설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시설(지하보도 및 지하상가)을 다음과 같이 신설,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

가. 지하보도(지하상가) 시설조서

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
시한다.

2. 관계 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10.21.

서울특별시장

구 분	시 설 명	위 치	폭 원	연 장	면 적
신 설	소공동지하보도 (지하상가)	시청앞광장-소공동	20 m	110 m	2,200 m ²
		소공동 - 미도파	13 m	25 m	325 m ²
기 정 변 경	남대분지하보도	남대문도큐호텔 앞	6 m	35 m	210 m ²
		"	6 m	75.2 m	451.2 m ²
신 설	한국병동앞 지하보도	노량진 - 한국병동간	4 m	140 m	560 m ²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식탁) 도면은 서울시청과 중구청
및 관악구청에 비치

◎서울특별시고시제 175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시내버
스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
부고시 제123호(73.4.4)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p>국 도시계획과의 관할 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5. 10. 22.</p> <p>서울특별시 가. 주차장 결장조서</p>		<p>◎서울특별시고시제 176호</p> <p>비료판매업 등록고시</p> <p>비료단속법 시행령 제6조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료판매 영업등록을 고시한다.</p> <p>1975. 10.</p> <p>서울특별시</p>	
위 치	면 적	비 고	
도봉구우어동18-2	1,328평		
<p>※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p>			
등록번호	비료명칭	보증성분량	판매자주소, 성명 및 판매소소재지
75-1	아미노산 발효부산 비료액	농수산부고시 제 2667 호	1. 주소 : 서대문구용암동 397-247 성명 : 김 용 옥 2. 판매장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용암동 98-21
<p>1. 유효기간 : 75.10 ~ 78.10.1</p> <p>2. 조 건 :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인에게 등록권을 양도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공 고</p> <p>◎서울특별시공고제 253호</p> <p>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p> <p>1. 건설부고시 제 2948 호(66.12.17)</p>		<p>로 고시된 잠석로 지내도로 개설 공사 구간내의 지속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p>	

<p>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5. 10. 22.</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p> <p>< 공람개요 ></p> <p>1. 사업시행의 위치: 성북구 장위동 66-74</p> <p>2. 사업의 종류와 명칭: 장석로 지내 도로 개설공사</p> <p>3. 사업의 규모: B = 20 m, L = 280 m</p> <p>4.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75.6.15 ~ 76.10.1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토지 조서</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서령인가</p> <p>1. 사업시행지 위치 성북구 장위동 66-74</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장석로 도로 개설공사</p> <p>3. 사업규모 B = 20M, L = 280 M</p> <p>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p> <p>5. 사업예산규모</p> <p>가. 총공사비 5,200 만원</p> <p>나. 공사비 2,200 만원</p> <p>다. 보상비 3,000 만원</p> <p>6. 착수 및 준공예정일 1975. 6.15 ~ 1975.10.10</p> <p>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1,603.0 평</p>
<p>장석로 도로공사 구간 토지 내역 (장위동)</p>	

번호	원		수용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장위동 75-59	답	80	장위동 75-59	답	80	간암동 5가 84-12	이금선
2	74-141	전	82	74-141	전	82	장위동 89	장유두

번호	원			수 용			소 유 자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3	장위동 74-35	대	14	장위동 74-85	대	14	장위동 74-31	전여진	
4	74-80	"	67	74-264	"	7	" 74-30	이조녀	
5	74-80	"	11	74-265	"	5	" 74-80	이봉한	
6	74-29	"	53	74-266	"	25	" 74-29	최응복	
7	74-54	"	38	74-273	"	9	" 74-54	이윤장	
8	74-31	"	60	74-31	"	60	" 74-31	전여진	
9	74-33	"	22	74-272	"	3	" 74	김태순	
10	74-32	"	35	74-271	"	10	중구올지로 5가7	장효봉	
11	74-53	"	90	74-53	"	90	장위동 74-1	윤창노	
12	74-58	"	6	74-274	"	3	" 74-1	윤창노	
13	74-57	"	41	74-270	"	37	현저동 9-18	우종노	
14	74-59	"	11	74-267	"	3	종암동 100-37	은태원	
15	74-1	"	21	74-268	"	9	" 100-37	은태원	
16	74-56	"	61	74-264	"	58	장위동 74-1	윤창노	
17	74-179	잡	538	74-179	잡	538	중구충무로1가53-1	주식회사 제일은행	
18	69-19	대	60	69-140	대	52	장위동 69	한명순	

번호	원			수 용			소 유 자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경	
19	장위동 69-20	대	44	장위동 69-20	대	44	서대문구합동21-1	박성일	
20	69-18	"	201	69-139	"	11	장위동 69	김장국	
21	69-21	"	24	69-141	"	2	" 69	황충용	
22	69-34	"	70	69-143	"	8	마포구염리동22-70	최인순	
23	69-33	"	92	69-142	"	89	장위동 262-10	이흥근외2	
24	69-64	"	103	69-64	"	103	" 69-64	신귀만	
25	69-28	"	17	69-144	"	7	서대문구합동21-1	박성일	
26	69-27	"	34	69-145	"	1	장위동 69	최장천	
27	69-65	"	12	69-146	"	9	서대문구합동21-1	박성일	
28	69-32	"	88	69-150	"	11	장위동 69	홍순남	
29	69-31	"	114	69-149	"	31	서대문구합동21-1	박성일	
30	69-30	"	56	69-30	"	56	장위동 69	김장국	
31	69-29	"	49	69-147	"	22	봉산용문 126	김수현	
32	69-97	"	30	69-148	"	16	" 32	신완성	
33	69-48	"	64	69-151	"	0.6	장위동 69-48	이옥영	
34	69-46	"	64	69-46	"	64	면 동 96	박진태외2	
35	69-45	"	92	69-154	"	9	장위동 69-45	염중식	
36	69-50	"	122	69-153	"	7	" 69	황윤희	
37	69-49	"	97	69-152	"	89	" 69	황태영	
38	64-1	"	156	64-2	"	101	" 64	저성순	

○서울특별시공고제 254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상하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581 호 (71.9.30) 로 고시된 성북동 지내도로 개설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 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0. 22

서울특별시장

< 공람거요 >

1. 사업시행의 위치 : 성북구성북동 101-276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성북 2 동 지내도로공사
3. 사업의 규모 : B=12m, L=680m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 1975.5.12 ~ 1976.10.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제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도시계획 시행인가

1. 사업시행지 위치 : 성북구 성북동 101-27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성북 2 동 지내도로확장공사
3. 사업규모 : B=12 M, L=68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예산규모

가. 총공사비	7,700 만원
나. 공사비	5,500 만원
다. 보상비	2,200 만원

6.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75. 5. 12 ~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698.7 평

성북동(성북동102의1~수월암간) 도로공사구간 토지 수용내역

No	원			수			소		비	고
	지	지	지	지	지	지	주	성		
	번	목	적	번	목	적	소	명		
1	236-2	대	42	236-3	대	34	성북동 236-2	김복영외1		
2	-1	"	22	-4	"	10	" 236-1	신성환		
3	237-1	"	50	237-6	"	27	" 237-1	양원삼		
4	-2	"	50	-7	"	23	" 237-2	신현길		
5	-5	"	39	-8	"	31	" 237-5	김재지		
6	-3	"	44	-9	"	5	" 237-3	신성수		
7	-4	"	14	4	"	14	" 237-4	권막규	전필지	
8	238	"	15	238-	"	15	용산구한강로2가30	이석구		"
9	245-1	"	34	245-2	"	30	"	"		
10	232-4	"	41	232-13	"	5	성북동 113	이은석		
11	235-2	"	21	235-3	"	2	" 235	이정희		
12	235-1	"	42	-4	"	4	" 235-1	이필형		
13	234-2	"	36	234-3	"	6	종로면 훈1가 56-3	김희진		
14	-1	"	48	-4	"	8	"	"		
15	233-1	"	50	233-4	"	3	아현동 627-17	김동식		
16	241-1	"	501	241-4	"	4	용산구한강로2가30	이부용		
17	243-3	"	570	243-13	"	20	동선3가 11	이준용		
18	-10	"	42	-14	"	2	"	"		
19	-11	"	41	-15	"	0.8	용산구청파 2가2-2	원혁희		
20	-5	"	656	-16	"	12	성북동 243-5	장봉용		

No	원			수 용			소 유 자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21	94-1	대	233	94-3	대	1	성북동 95	김 중 인	
22	97-12	"	135	97-18	"	0.8	종로구가회동 11-11	전성우외 5	
23	-12	"	135	-17	"	5.9	"	"	
24	-13	건	33	-19	건	22	"	"	
25	-11	"	55	-11	"	55	"	"	전필지
26	-3	"	1,287.3	-16	"	83.2	"	"	
27	106-2	도	4	106-2	도	4	종로구종로 4가 112	전 형 필	전필지
28	106-1	대	35	-3	대	26	"	"	미분할
29	105	"	10	105-2	"	2	"	"	"
30	104	"	147	104-2	"	21	"	"	"
31	100-1	"	122	100-3	"	19	성북동 100-1	유 갑 순	
32	-2	도	2	-2	도	2	중구주교동 47-3	손 준 봉	전필지
33	102-2	"	7	102-2	"	7	성북동 102	김 진 용	"
34	-1	대	88	-3	대	30	"	"	
35	107-1	"	96	107-4	"	9	종로구명륜동 4가 10	지 철 근	
36	103	"	288	103-2	"	96	종로구세화동 26-15	송 욱 자	
37	103-1	"	81	-3	"	9		국	
계			5,176.3			648.7			14

○ 중구 공고제 205 호

공인신조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6 조 규정에
의거 아페와 같이 신조하였거 동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함.

1975. 10. 23

서울특별시 중구 청 장
신조 사용년월일 : 1975. 10. 1.

공 인 의 인 영

희 천 동 장 인 충 무 모 4-5 가 동 장 인 필 동 장 인 을 지 모 4-5 가 동 장 인



○ 성 부 구 공 고 제 211 호

동장지인 및 개인 계 각 공 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제 6 조의 규
에 의거 아페와 같이 계 각 하였거
동조례 제 9 조에 의하여 이에 공 고
함.

동·경능 1.2.3.4 동·충암
1.2 동·하월곡 1.2.3 동
장위 1.2 동

1975. 10.

성 부 구 청 장

1. 사용일자 : 1975. 11. 1

2. 인의형상 : 2명 4각형 한글전서체

3. 공인의 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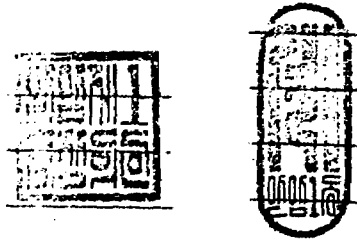
대상동 : 삼선 3 동·돈암 1 동·안암 1

삼 선 제 3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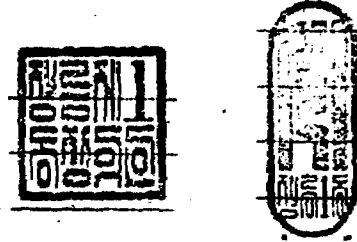
돈 암 제 1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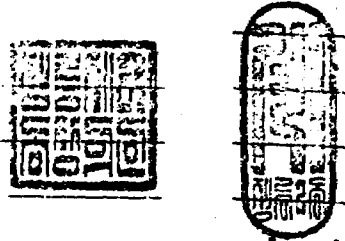
안 암 계 1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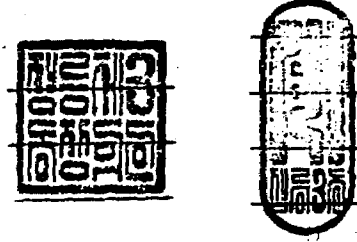
정 능 계 1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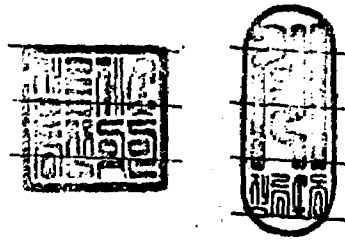
정 능 계 2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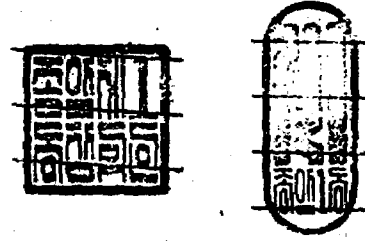
정 능 계 3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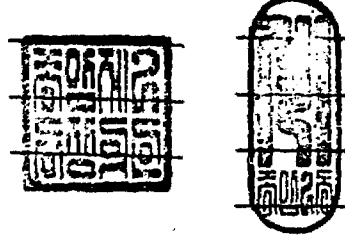
정 능 계 4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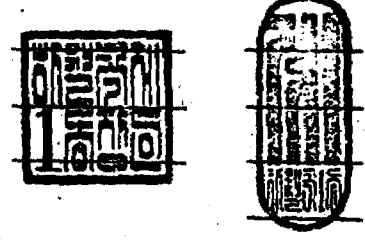
중 암 계 1 동



중 암 계 2 동



하 암 계 1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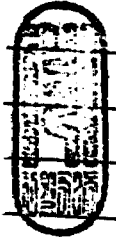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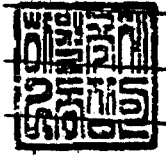
제 527 호

시

보

1975.10.22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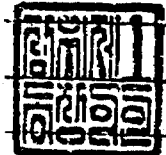
하 월 국 제 2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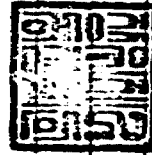
하 월 국 제 3 동



장 위 제 1 동



장 위 제 2 동



◎ 강남구청공고제 2 호

동장공인공고

1975.10.1자로 설치된 강남구청
산하 동장공인을 신조하였기 나옴과
같이 공고한다.

1975.10. .

강남구청장 국용호

1. 공인의 명칭 :

- 가. 잠실 1동장인 (지인)
- " (계인)
- 나. 잠실 2동장인 (지인)
- " (계인)
- 다. 잠실 3동장인 (지인)
- " (계인)
- 라. 잠실 4동장인 (지인)
- " (계인)

2. 공인의 인명 :

잠실 1 동장인	직 인	계 인	잠실 2 동장인	직 인	계 인
잠실 3 동장인	직 인	계 인	잠실 4 동장인	직 인	계 인

3. 사용개시년월일 : 1975.10.1

사 령

◎ 1975.10.22

시정개발지방법정 동수철 담당관 사무관시보 공수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법정 남상지 주사보 남상지 서울특별시 건입을 명함.

3호봉을 급함. 성복구군무를 명함.

◎ 1975.10.27

도봉구 지방행정 김명희 지방기계거원에 입함.

30호봉을 급함.

수도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행정 장경순 지방건축거원보에 입함.

7호봉을 급함.

양서출장소군무를 명함.

◎ 1975.11.1

시내문구 지방행정 김상의 (지위해제중) 사무관 김상의

부직을 명함.

지하철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